

이천시수도급수조례증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2004. 12. 20(월)

산업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4년 12월 9일 이천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4년 12월 9일

다. 상정일자 : 제74회 이천시의회(제2차 정례회)

제1차(2004. 12. 17) 산업건설위원회 상정

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(제안설명자 : 건설도시국장 박재한)

가. 제안이유

- 상수도원인자부담의 감면대상을 지방자치단체만이 아닌 국가 공공시설로 확대하여 공공시설 유치를 활성화 하고,
-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시설 및 부과면적을 개정하여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며,
- 상수도원인자부담금과 시설분담금 이중부과를 개선하여 납부자들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원인자부담금의 감면대상을 추가 (안 제14조의2제1항)
-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 개정 (안 제14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8호)
- 원인자부담금 납부자의 시설분담금 감면기준 추가 (안 제14조의2제2항)
- 상수도 미 급수시설에 대한 부과기준 추가 (안 제14조의2제3항)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: 박규하)

- 상수도원인자부담의 감면대상을 국가공공시설로 확대하여 공공시설유치를 활성화하고 원인자부담금징수에 효율과 납부자들의 부담을 경감하고자
- 제14조의 2 제1항 수도법 제53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은 각호에 의한다. 다만, 「당해 지방자치단체가」를 「국가 및 지방자치단체」로 자구 수정하였고, 공공을 목적으로 하는 「것은」을 삭제 하였으며, 「주차장면적」을 「주차장연면적」 자구 수정하였고, 창고업시설 연면적 「(유치원, 초·중·고교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시설에 한한다.)」를 「(상수도급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시설에 한한다.), 교육시설연면적 (유치원, 초·중·고교시설에 한한다)」로 자구 수정하였으며
- 제14조의 2의 제2호에 숙박시설에 건축연면적 「8제곱미터」를 「6제곱미터로」로 숫자 조정하였고
- 제14조의 2의 제3호에 「교육·연구시설: 대학, 전문대학, 교육원, 연구시설 등」을 「교육·연구 및 복지시설: 대학, 전문대학, 교육원, 연구소, 아동관련 시설, 생활 또는 자연권수련시설 등」으로 확대 하였으며
- 제14조의 2의 제5호에 「판매·영업시설: 건축연면적 1천 3백 제곱미터」를 「판매·영업·근린생활·업무시설」로 자구 수정하였고
- 제14조의 2의 제6호에 「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: 건축연면적 1천 3백 제곱미터 이상」을 「공장: 건축연면적 1천 5백 제곱미터 이상」으로 숫자를 수정하였으며
- 제14조의 2의 제8호에 기타시설: 건축연면적 「1천 5백 제곱미터 이상 (운동시설, 위락시설, 관광휴게시설, 묘지관련시설, 도축장 및 도계장시설)」을 「2천 제곱미터 이상(상기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 또는 2 이상 용도의 복합건축물)」로 자구 및 숫자를 수정하였고

- 제14조의 2의 제9호에 「토지구획정리사업, 택지개발조성사업, 공업용지 조성사업 등 대단위 사업」을 「도시개발사업, 택지개발조성사업, 공업용지 사업 등 대단위(30,000 제곱미터 이상) 사업」으로 자구 및 숫자를 삽입하였으며,
- 제14조의 2 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, 「제2항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에 한하여 제14의 시설분담금은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에 해당되는 금액만큼 이를 감면한다.」를 신설 삽입하고 「제3항 상수도 미 급수 시설에 대하여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으며 향후 상수도 급수 신청 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일시불로 완납하여야 한다.」를 신설 삽입한 개정조례로써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론요지 : 생 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(만장일치)

7. 기타사항 : 없 음